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

배포 일자: 2021년 7월 8일

발 표 자	김태호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강상식 과장 044) 204-3201 반재훈 과장 044) 204-3271 나향미 과장 044) 204-2501
담당자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박형민 사무관 044) 204-3282 김희재 사무관 044) 204-2512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 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 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 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10.3%↑)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 명) 때보다 3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2.9만 명)는 직전 과세기간('20. 1. 1.~12. 31.)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기존	연장 운영
7.1.~7.26. 매일 06:00~24:00	7.1.~7.25. 매일 06:00~다음날 1시까지 7.26.(마감일) 06:00~24:00

-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신고방법	대상자
전자신고	홈택스	인터넷(pc) '홈택스' 접속	모든 사업자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모든 사업자 중 일부* 제외 *영세율 재활용 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ARS	☎ 1544-9944로 전화	무실적 사업자
우편신고	서면	신고서를 우편 발송	모든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①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¹⁾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 30.까지) 직권²⁾ 연장합니다. (43.8만 명)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6. 30.)
- 납부기한만 연장(9. 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 7. 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참고4-1](#))을 발송(7. 12.)합니다.

②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 (1.9만 명)
 - * 종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전 업종)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참고4-2](#))을 발송(7. 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 1. 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 8. 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5](#))
-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흠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①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참고6](#))
 -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 1. 개시)를 제공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 (참고7)
 -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참고8)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화면 |

③ 현지 도움창구 설치·운영으로 신고지원

- (현지 도움창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합니다.
-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세무서	현지 도움창구		
중부청 (9)	홍천	인제터미널 민원실	춘천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이천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삼척	지역민원실(동해)
	동수원	오산시청	원주	봉평전통시장상인회
	남양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인천청 (2)	인천	영종출장소	김포	강화군청
대전청 (8)	동청주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대전	지역민원실(금산)
	영동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홍성	지역민원실(청양)
	보령	지역민원실(장항)	서산	지역민원실(태안)
광주청 (29)	전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광주	화순군청, 곡성국민회관
	남원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광산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복광주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여수	거문도수협
	나주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목포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남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금지점)		
	순천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서대구	한국외식중앙회 고령군지부	안동	음식업자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대구청 (13)	남대구	달성군청	상주	문경시민운동장
	경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영주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구미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영덕	후포새마을금고
	경산	청도군청, 하양곰바우시장		
	마산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창원	지역민원실(진해)
부산청 (12)	진주	산청군청	제주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통영	면사무소(사량면, 욕지면)	양산	양산시청 응상출장소
	거창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 신고도움서비스 유형(Tab) 확대 |

The screenshot shows the KTX interface with various tabs at the top: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and '대법원주요판례'. The '대법원주요판례' tab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tabs, there is a section titled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with a table listing several court rulings (Jungsu, Gwonyeo, Chungsung, Kimyung, Seokwon) with their respective details.

원고	세목	판시사항
조O숙 외 1 (2020두40914)	부가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권O모 외 3 (2020두43289)	부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정O범 (2020두44749)	부가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제O경 (2020두42637)	부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김O임 외 3 (2020두44725)	부가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석O원 (2017두49157)	부가	• 원고는 A로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할 의무까지 포함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로부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107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참고9)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 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10.3%↑)

|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전문직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자료,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②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서비스 (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도소매 (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자료, ②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유형	주요 안내 내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미용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골프 관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수수료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온라인 매출 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제작·수리 업종을 추출하여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경우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해서도 신고의무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매입공제 내역과 매출액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매출 성실신고 안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회방법) 흠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10)

* (접근경로) [납세자용] 흠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흠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참고14) |

- ①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 ②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 ③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 ④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 ⑤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2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3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5
4.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4-1.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16
4-2. 예정부과 제외 안내문	17
5. 경영애로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8
6.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19
7. 홀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20
8.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제공	21
9.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22
10.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4
11.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9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30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32
14.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33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1.1.~6.30.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7.1.~12.31.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 · 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모든 사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 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ul style="list-style-type: none">7.26.(신고마감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시간: 2021. 7. 26.(월)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 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으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7.14.
2		신용카드 매출	21.7.13.
3		현금영수증 매출	21.7.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7.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7.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7.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7.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7.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7.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7.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7.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7.1.
13		재고납부세액	21.7.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7.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7.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1.7.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1.7.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1.7.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7.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7.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7.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7.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7.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7.14.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7.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7.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1.7.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21.9.30.까지 납부)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귀하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사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21.9.30.까지**)하였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1.9.30.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7.26.까지**하셔야 합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사업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이후 영업제한 · 집합금지 조치**된 소상공인
-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기준

세무서 상담전화

☎ 044- 850-8273

세종 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제외 안내문
('21.7월 고지 제외, '22.1월 신고)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정부과 제외 안내

-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귀하는 '21년부터 상향된 **납부면제 기준금액(4천8백만 원) 적용**이 **예상**되어, 이번 **부가세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 따라서, 7월 **예정부과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니**, '21.1월 ~12월 실적에 대해 '22.1.25.까지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 사업자

- ▶ 직전기(20년 귀속)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
- ▶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 기준

세무서 상담전화

☎ 044- 850-8273

세종 세무서장

참고 5

경영 어려움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 4. 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6

비대면(unco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 보기」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터치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번) 확인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번) 확인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챗봇 상담서비스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챗봇」 클릭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예정부과세액 확인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 예정부과 제외자는 '세정지원'으로 표시

참고 7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배경)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한 「홈택스 2.0」 구축의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제공

|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



- (주요 내용)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신고기간에만 제공)

-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하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

| 내비게이션 구성 단계 |



참고 8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제공

- (현황) '21년도 간이과세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개발 추진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개정) 8,000만 원 미만
- (추진내용)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제공

<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화면 >

- ▶ 직전신고내역 불러오기와 직접계산 버튼 누르면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 자동계산 가능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비교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영 세 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	10/100	1,0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0	10/100	0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40,000,000	10/100	4,000,000
	기타(정구영수 증 외 매출분)	0	10/100	0
	영 세 표 준 및 매 출 영 세 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100
매 입 세 액	기타	0	0/100	
	예정고지누락분	0		0
	대손세액 가감	0		0
	① 합계	50,000,000		5,000,000
	세금계산서 수취분	10,000,000		1,000,000
공 제 세 액	예정선고 누락분	0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0,000,000		1,0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0		0
	② 차감계	20,000,000		2,000,000
③ 납부(한급)할 세액(①매출세액-②매입세액)	3,000,000			
경 감 공 제 세 액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44,000,000		572,000	
합계	572,000			
④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 등)	0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세액(한급받을 세액) (⑨-⑩)	2,428,000			
⑤ 납부(한급)할 세액(①매출세액-②매입세액)	3,000,000			
경 감 공 제 세 액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44,000,000		572,000	
합계	572,000			
⑥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 등)	0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세액(한급받을 세액) (⑨-⑩)	2,428,000			
⑦ 실제 납부할 세액	693,000			

직전 신고 내역 불러오기 클릭하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역을 불러와 모두채움 기능을 이용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 자동계산

참고 9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매입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 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전문서비스업	◦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자동차 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방역업체 사업자 성실신고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지급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및 용품 비대면 매출 신고 안내
서비스업	◦ 프리랜서 플랫폼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서비스업	◦ 키즈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업	◦ 골프부킹앱을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골프용품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자료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간이과세 유형전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참고 10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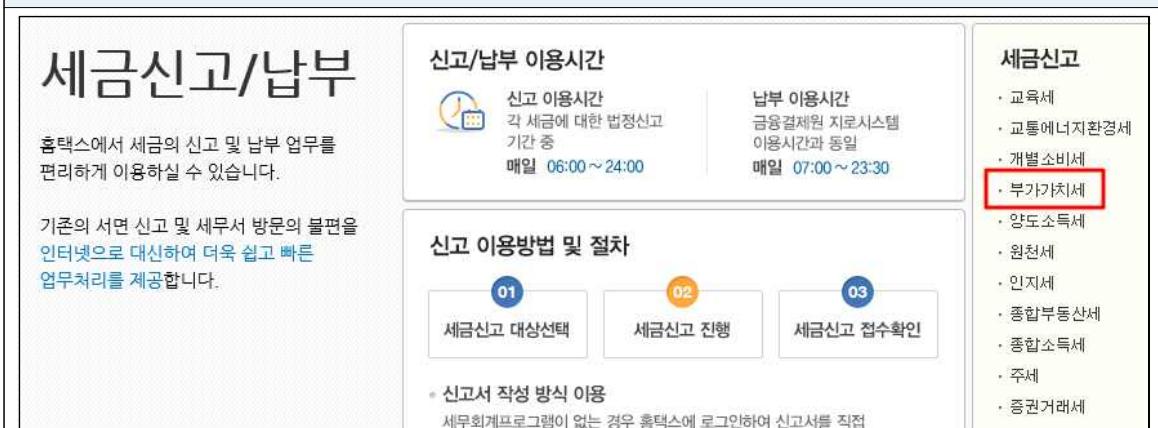
01. 홍택스 접속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homepage. A red box highlights the '로그인'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Below it, a search bar and a '사설증명신청' button are visible. The main menu includes icons for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and various service links like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 범인내 신고 도움서비스, 전자내금계산서 발급, 원금예수증 사용내역 조회, 사업자등록 신청, 환급금 조회, MyNTS, and 설정. A prominent pop-up window titled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appears, stating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and '홍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t features a large red button labeled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At the bottom right of the pop-up is a '닫기' button and a '오늘 하루 보지 않기' checkbox.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홍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세금신고/납부' section of the HomeTax portal. On the left, there's a note: '홍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d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In the center, there's a box for '신고/납부 이용시간' with two sections: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and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7:00 ~ 23:30). On the right, there's a '세금신고' column with a list of tax types: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highlighted with a red box), 양도소득세, 원천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The '부가가치세'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부가가치세 신고' section of the HomeTax portal. It features a grid of service buttons categorized by taxpayer type: 일반과세자 (General Taxpayer), 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payer), 기타/증빙서류 (Others/Documentation), and 카드사 대리납부 (Card Company Agent Declaration). The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buttons include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and various specialized options like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전기와 계약등일),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and 정기신고 (문문형신고).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흠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기장대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경계 조회

-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 고지내역 조회 >
- 체납내역 조회 >
- 환급금 조회 >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

세무대리인 공통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총액 조회 >
- 사업용신용카드누계조회 >

신고대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조회

- 증여세결정내역 >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

납세관리

납세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관리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기타 조회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도와 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일괄조회”버튼을 이용하여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년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세무대리인일괄조회**

개별분석 자료 기본 사항 과거 신고내용분석 세법 개정내용 세법 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① 개별분석 자료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신고도움서비스 일괄조회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S85547 * 세무대리 구분 기장수임

* 신고도움서비스 대상자 구분 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 전체 수임사업자

※ 개별분석자료 제공 사업자 : 수임 등의된 납세자중 개별안내자료가 등록된 납세자목록 조회

조회하기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도와 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1기 * 신고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조회하기

안내사항		안내내용	
그 밖의 공제매입금액(①)	매입금액 합계(②)	그 밖의 공제매입금액/매입금액(①+②)	
그 밖의 공제매입금액 합계 13,940	매입금액 합계 29%		

○ 사업과 관계없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매입 세액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시 명확하게 경로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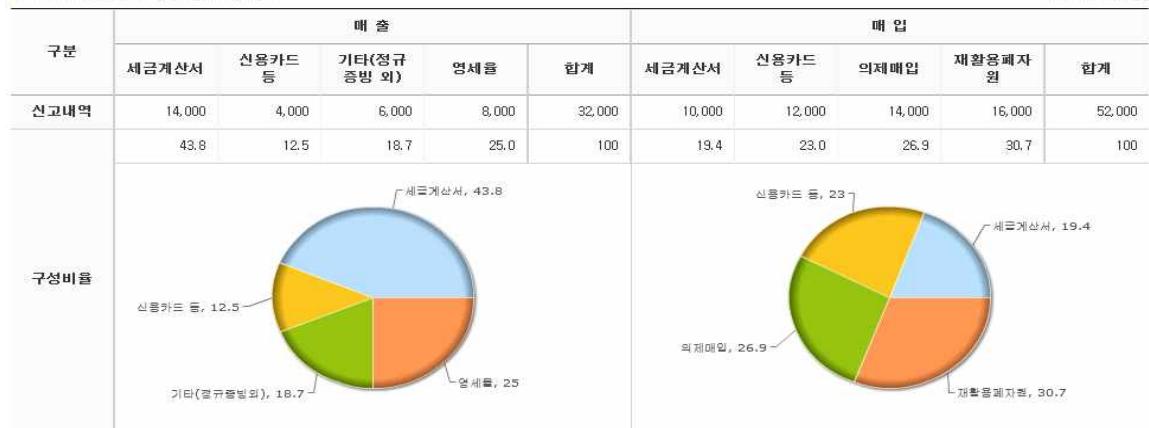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금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신고 누락 예) 소송불복 성공보수, 신고대발 수수료, 검인비 등 소액 수수료, 설계 디자인 보수 ○ 실제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고 누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후 신고 누락 ○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가사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 직전기 개인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

(단위: 천원, %)



○ 직전기 업종편균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주업종기준)

(단위: %)



* 상기 매출 및 매입 구성비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본사항 TAP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1기	* 신고구분	<input type="radio"/> 예정	<input checked="" type="radio"/>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조회하기																																																																																																																																																																																																
개별분석 자료		기본 사항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p>● 기본 사항</p> <table border="1"> <tr> <td>신고내내 자료에 대한 문의</td> <td colspan="9">종로 세무서 소득세과 융파찰 조사관 (☎ 0000-0000-0000)</td> </tr> <tr> <td>상호(법인명)</td> <td>테스'트(※설너述)</td> <td>성명(대표자)</td> <td colspan="7">(테스트개인3)</td> </tr> <tr> <td>업태</td> <td>도매 및 소매업</td> <td>종목</td> <td colspan="7">전기기기·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td> </tr> </table> <p>●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확인할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매출</td> <td colspan="9">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td> </tr> <tr> <td colspan="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td> </tr> <tr> <td colspan="9"><현금매출> 계좌 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td> </tr> <tr> <td colspan="9"><영세> 수출통관내역, 내국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td> </tr> <tr> <td rowspan="4">매입</td> <td colspan="9"><철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td> </tr> <tr> <td colspan="9"><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td> </tr> <tr> <td colspan="9"><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td> </tr> <tr> <td colspan="9"><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점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td> </tr> <tr> <td rowspan="4">기타</td> <td colspan="9"><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td> </tr> <tr> <td colspan="9"><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td> </tr> <tr> <td colspan="9"><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td> </tr> <tr> <td colspan="9"><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td> </tr> <tr> <td colspan="10"><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폐자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td> </tr> <tr> <td colspan="10"><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역전송(0.5%) 확인</td> </tr> <tr> <td colspan="10"><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td> </tr> <tr> <td colspan="10"><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기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td> </tr> </tbody> </table>										신고내내 자료에 대한 문의	종로 세무서 소득세과 융파찰 조사관 (☎ 0000-0000-0000)									상호(법인명)	테스'트(※설너述)	성명(대표자)	(테스트개인3)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기기기·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확인할 내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 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 수출통관내역, 내국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매입	<철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점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기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폐자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역전송(0.5%)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기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신고내내 자료에 대한 문의	종로 세무서 소득세과 융파찰 조사관 (☎ 0000-0000-0000)																																																																																																																																																																																																							
상호(법인명)	테스'트(※설너述)	성명(대표자)	(테스트개인3)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기기기·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확인할 내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 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 수출통관내역, 내국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매입	<철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점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기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경업> 과·면세 경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폐자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역전송(0.5%)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기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세법개정내용 TAP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1기	* 신고구분	<input type="radio"/> 예정	<input checked="" type="radio"/>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조회하기																																	
개별분석 자료		기본 사항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p>●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개정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td> <td>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td> </tr> <tr> <td>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td> <td>기준금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td> </tr> <tr> <td>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td> <td>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td> </tr> <tr> <td>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td> <td>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td> </tr> <tr> <td>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조정</td> <td>일반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td> </tr> <tr> <td>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td> <td>적용 배제</td> </tr> <tr> <td>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td> <td>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td> </tr> <tr> <td>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신정방식 변경</td> <td>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td> </tr> <tr> <td>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시유 확대</td> <td>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td> </tr> <tr> <td>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td> <td>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td> </tr> <tr> <td>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td> <td>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기재</td> </tr> <tr> <td>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td> <td>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td> </tr> <tr> <td>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td> <td>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td> </tr> <tr> <td>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진시유 보완</td> <td>재화의 공급시기 기록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td> </tr> <tr> <td>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td> <td>직전기(6개월) 공급기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td> </tr> </tbody> </table>										구 분	개정 내용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조정	일반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신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시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기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진시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 기록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기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구 분	개정 내용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조정	일반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신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시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기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진시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 기록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기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1기 ▾ * 신고구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 과거 신고내역 분석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

부가율 추이

기준일	Sales Amount (백만원)		VAT Amount (백만원)		VAT Rate (%)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2020년 2기	9	0	4	0	48.6%	48.6%
2020년 1기	12	0	5	0	53.5%	53.5%
2019년 2기	23	0	7	0	67.4%	67.4%
2019년 1기	27	0	6	0	69.9%	69.9%

구분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9	0	12	0	23	0	20	0
(0)	(0)	(0)	(0)	(0)	(0)	(0)	(0)	
매입액 (고정자산)	4	0	5	0	7	0	6	0
(0)	(0)	(0)	(0)	(0)	(0)	(0)	(0)	
납부/환급세액	0	0	0	0	0	0	0	0
부가율	48.6	0.0	53.5	0.0	67.4	0.0	69.9	0.0

*(참고)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제외, 매입액 : 신고서상 매입금액 - 고정자산매입액)

면세매출 신고 비중

기준일	면세매출비율 추이	
	확정	예정
2020년 2기	32.9%	32.9%
2020년 1기	31.7%	31.7%
2019년 2기	24.9%	24.9%
2019년 1기	21.5%	21.5%

구분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9	0	12	0	23	0	20	0
면세 수입금액	4	0	2	0	3	0	5	0
면세 매출비율	30.8	0.0	16.7	0.0	14.0	0.0	21.1	0.0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면세수입금액 : 신고서 상 면세사업수입금액
 전체 수입금액 : 과세매출금액 + 면세수입금액
 면세매출비율 : 면세수입금액 / 전체매출금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기준일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추이	
	확정	예정
2020년 2기	100%	100%
2020년 1기	100%	100%
2019년 2기	100%	100%
2019년 1기	100%	100%

구분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9	0	12	0	23	0	20	0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9	0	12	0	23	0	20	0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100.0	0.0	100.0	0.0	100.0	0.0	99.0	0.0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고서 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과세 매출금액

참고 11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 모바일(손택스)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 ③ 아이디·비밀번호, 공동·금융인증서, 생채(얼굴·지문)인증 방식으로 접속 가능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① ARS 연결 	② 서비스 선택 	③ 인증 · 접속 	④ 신고서 확인 · 제출
---------------------	---------------------	----------------------	--------------------------

참고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 앞 면 >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가 유형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신고·납부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여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25 과세기간

2021년 1월 ~ 6월 까지의 사업 실적

25 신고 방법

전자신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 직접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PC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 총택스 로그인 > 총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 보기
(모바일 접근경로)
- Youtube > 검색창에 「국세청 유튜브」조회 > [再生] 클릭

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직접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별 서면신고 사례를 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25 신고 문의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 번 (1번 → 3번), 09:00 ~ 18:00

기타신고 아래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일반신고 문의는 우리 세무서 상담전화(☎)

), 전자신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0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운영 시간

- 7. 1. ~ 7. 25. (공휴일 포함),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01:00
- 7. 26. (신고 마감일), 06:00 ~ 24:00

» 신고 방법

- 인터넷 「홈택스」 검색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①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단,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음식·숙박업 등), 제활용폐자원공제 신고자,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무실적 신고

- (모바일)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

※ 접근방법 : ①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무실적 신고 ⑥신고서 제출 ⑦접수증 확인

- (보이는 ARS) ☎ 1544 - 9944로 전화

※ 접근방법 : ①보이는ARS 선택 ②부가가치세 신고 ③무실적 신고 ④사업자번호 입력
⑤주민등록번호 입력 ⑥신고서 작성 ⑦신고서 제출

[0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7:00~23:30

-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신용카드 (이용시간) 00:30~23:30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형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03]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 미리채움 서비스

-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

주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① 예정고지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7. 1.
②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7. 13.
③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7. 14.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2021년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2%

[04] 기한연장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참고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통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15 ~ 40%
의제매입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기타사업자 1.0%(~'21.12.3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참고 14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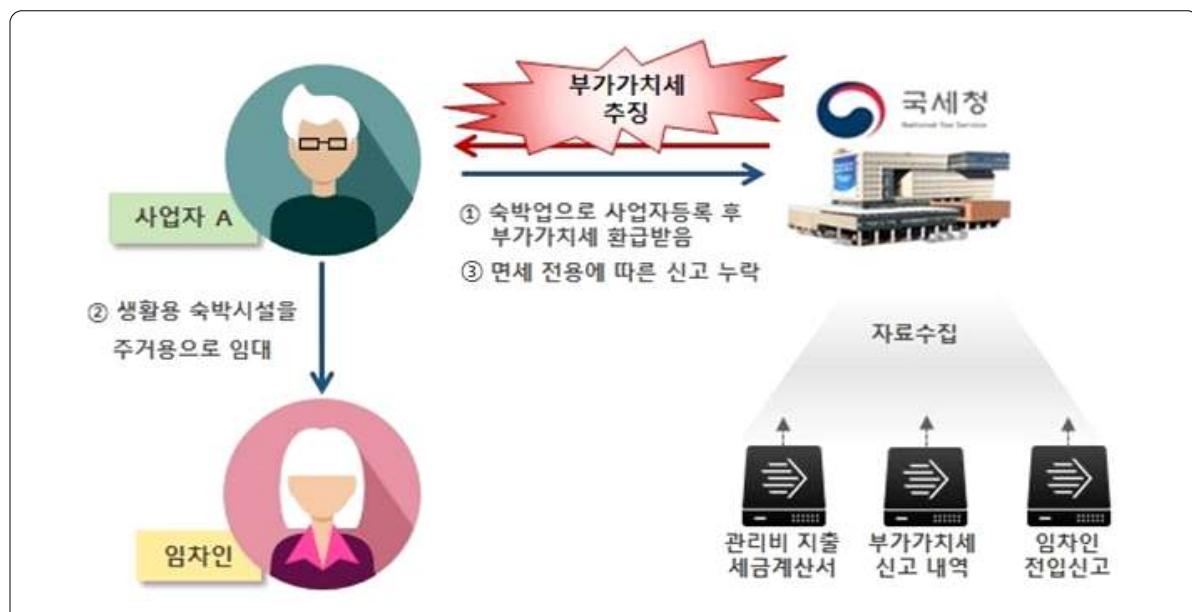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이나
 - 과세사업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

[조치 결과]

-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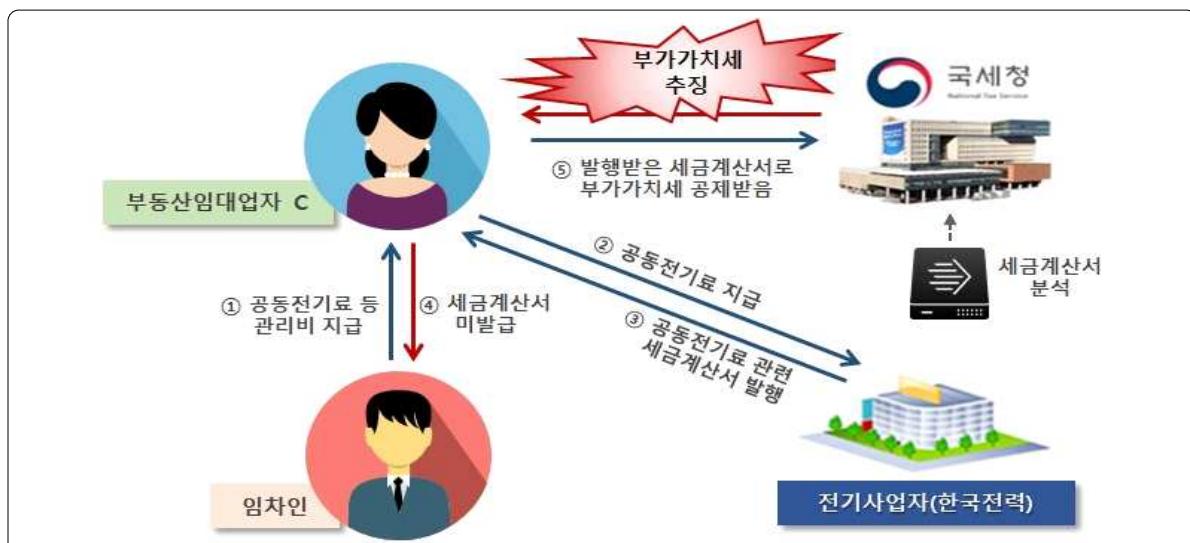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분석 내용]

- 부동산임대업자 C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⑯

[조치 결과]

-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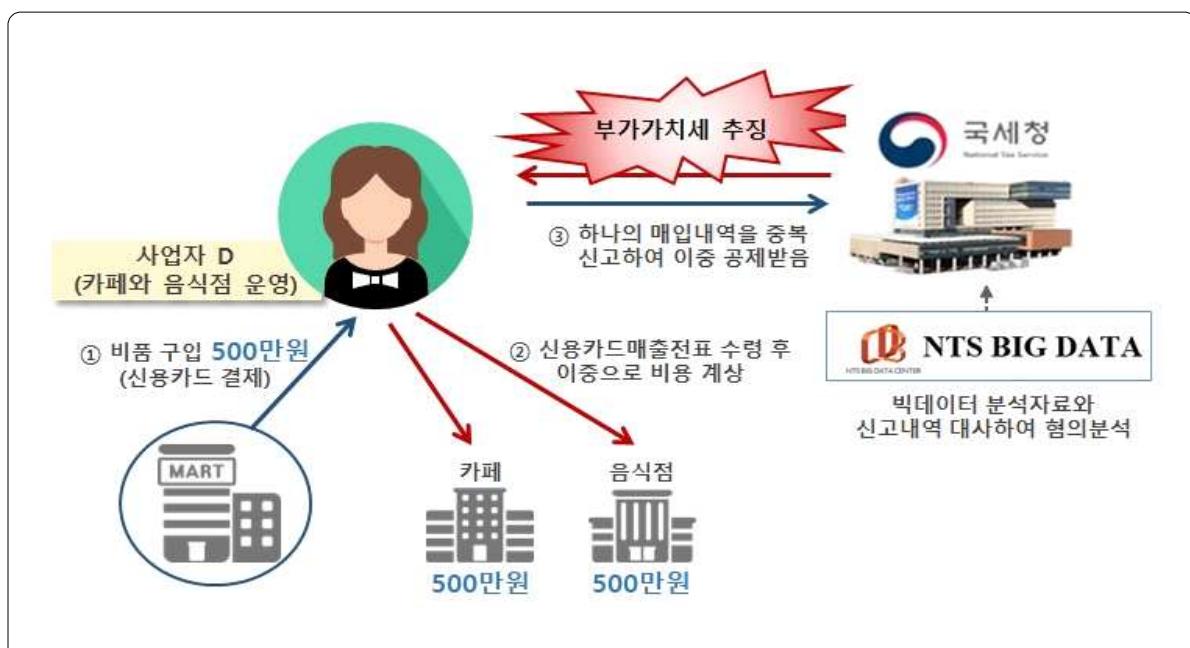
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로 매입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 거래로 중복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역과 대사하여
 -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5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의 임차(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조치 결과]

-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